|  |  |  |
| --- | --- | --- |
| **<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 인쇄발행에 대한 통지**  재세[2016]3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부 재정감찰전문요원 사무소  정부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수지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재정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을 제정하며, 이에 인쇄 발행하오니 집행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  재정부  2016년3월15일  첨부:  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정부세외수입(이하 "세외수입"으로 약칭)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수지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재정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외수입의 설립, 징수, 영수증, 자금 및 관리감독 등 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세외수입은 세수를 제외하고,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정부역할을 대행하는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권력, 정부신용 및 국유자원(자산)소유자권익 등을 이용하여 얻는 각종 수입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행정사업성요금수입  (2) 정부성펀드수입  (3) 벌금 및 몰수한 수입  (4) 국유자원 (자산) 유상사용수입  (5) 국유자본수익  (6) 복권공익금수입  (7) 특허경영수입  (8) 중앙은행수입  (9) 정부명의로 받는 기부금수입  (10) 주관부문에서 모은 수입  (11) 정부수입의 이자수입  (12) 기타 세외수입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세외수입은 사회보험비, 주택기금(개인계좌에 예금되어 계상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세외수입은 정부재정수입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재정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세외수입은 유형 및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를 실행한다.  세외수입은 유형 및 특징이 다르므로, 서로 상응하는 관리제도를 제정 및 분류한다.  각 지역 탐색을 장려하고 현지에 실제로 부합되는세외수입 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제6조 세외수입관리는 의법, 규범, 투명 및 고효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7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의 주관부문이다.  재정부는 전국 세외수입 관리제도와 정책을 제정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세외수입 설립을 심사 허가하며, 중앙 세외수입을 징수 및 관리감독하고, 지방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재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세외수입 관리제도와 정책을 제정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세외수입 설립을 심사 허가하며, 본 행정구역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을 책임진다.  제8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세외수입 관리시스템과 통계보고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과 징수관리  제9조 세외수입을 설립하고 징수하는 것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다음의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야 한다.  (1) 행정사업성요금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급"이라 약칭) 인민정부 및 그 재정 및 가격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징수한다.  (2) 정부성펀드는 국무원과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징수한다.  (3) 국유자원의 유상사용수입과 특허경영수입은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징수한다.  (4) 국유자산의 유상사용수입 및 국유자본수익은 국유자산(자본)재산권을 가진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이 국유자산(자본)수익관리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5) 복권공익금은 국무원과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다.  (6) 중앙은행수입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징수한다.  (7) 벌금 및 몰수한 수입은 법률 및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8) 주관부문이 모은 수입, 정부명의로 받은 기부금수입, 정부수입의 이자수입 및 기타 세외수입은 동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의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수취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는 규정을 위반하여 세외수입 항목을 설립하거나 또는 세외수입의 징수대상, 범위, 표준 및 기한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세외수입을 폐지, 정지, 감면, 면제 또는 연기하여 징수하고, 또한 세외수입의 징수대상, 범위, 표준 및 기한을 조정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설립 및 징수하는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야 하며, 권한을 넘어 비준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및 법규 규정이 폐지된 세외수입 항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외수입은 재정부문이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재정부문이 위탁한 부문과 단위(이하 "수납단위"라 약칭)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재정부문 비준을 거치지 않고, 세외수입 수납단위를 변경할 수 없다.  세외수입 수납단위에 대한 법률 및 법규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수납단위는 아래의 열거하는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세외수입 징수근거와 구체적인 징수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항목, 대상, 범위, 표준, 기한 및 방식 등을 포함한다.  (2) 엄격하게 규정된 세외수입 항목, 징수범위 및 징수표준에 따라 징수하고, 즉시 정액대로 세외수입을 납부하며, 체납 및 과소 납부한 수입에 대해 납부를 독촉한다.  (3) 기록, 집계, 대조 및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부문에 세외수입 징수납부 상황을 보고한다.  (4) 세외수입 연도수입예산을 작성 및 보고한다.  (5) 세외수입 관리의 기타 관련규정을 집행한다.  제13조 수납단위는 규정을 위반하여 세외수입을 과다징수, 사전징수 또는 감면, 면제, 연기징수를 할 수 없다.  제14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수납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수납단위에 세외수입목표를 하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국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하 "납세의무자"라 약칭)은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며 세외수입 항목을 설립하고, 징수범위를 확대하며, 징수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납세거부 및 관련부문에 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납세의무자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세외수입을 연기, 감면, 면제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납단위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수납단위는 관련부문에 보고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제17조 세외수입은 모두 국고에 상납하여야 하고, 모든 부문, 단위 및 개인은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점용, 유용, 직접지출 또는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세외수입 수납은 국고집중수납제도를 실행한다.  제19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수납 전자화 관리를 추진시키고, 나아가 징수원가를 절감하고, 수납수준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장 영수증관리  제20조 세외수입영수증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법적 증거와 회계결산의 원시자료이며, 재정 및 회계감사 등 부문에서 감독검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21조 세외수입영수증의 종류는 세외수입 통용영수증, 세외수입 전용영수증과 세외수입 일반 납부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열거하는 범위를 적용한다.  (1) 세외수입 통용영수증은, 수납단위가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발급하는 통용증명서이다.  (2) 세외수입 전용영수증은 특정 수납단위가 특정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발급하는 전용증명서이며, 주로 행정사업성요금 영수증, 정부성펀드 영수증, 국유자원(자산)수입 영수증, 벌금 및 몰수한 영수증 등을 포함한다.  (3) 세외수입 일반 납부서는 세외수입 수납관리제도개혁을 실시하는 수납단위에서 세외수입을 수납할 때 발급하는 통용증명서이다.  제22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영수증 관리를 강화하고, 수납단위의 징수행위 규범화를 통해 원천적으로 불법요금을 차단하고, 또한 법에 따라 합리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즉시 정액대로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세외수입영수증은 증명서 수령, 분류 제한, 이전 제도와 대조하여 새로운 제도를 실행한다.  수납단위는 세외수입영수증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재무 귀속관계에 따라 동급 재정부문에 신청하여 수령한다.  제24조 재정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수납단위가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재정부 또는 성급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작한 세외수입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격상 부가적으로 징수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납세가 필요한 관련 세외수입에 대해, 수납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 관의 규정된 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지불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세외수입영수증을 사용하는 단위는 세외수입영수증을 양도, 대출, 대리발급, 매매, 무단폐기, 수정할 수 없고, 세외수입영수증을 잘못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세외수입영수증을 기타영수증과 상호 대체할 수 없다.  제26조 세외수입영수증을 사용한 후, 사용단위는 순서에 따라 영수증부본을 정리하고, 책으로 제본하며,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세외수입영수증 부본의 보존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소각할 경우에는 기존의 영수증을 심사하여 발급한 재정부문에 신고하여 검사 후 소각한다.  제4장 자금관리  제27조 세외수입은 법률 및 법규규정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확정된 수입귀속과 납부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에 맞게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외수입을 나누어 실행할 경우, 직권과 지출 책임에 서로 상응되는 원칙에 따라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확정하고, 아래의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야 한다.  (1) 중앙과 지방에 관련되어 배분하는 세외수입은 국무원 또는 재정부에서 그 배분하는 비율을 규정한다.  (2) 성급, 시 및 현급에 관련되어 배분하는 세외수입은 성급 인민정부 또는 그 재정부문에서 그 배분하는 비율을 규정한다.  (3) 부문 및 단위 사이에 관련되어 배분하는 세외수입은 재정부 또는 성급 재정부문에서 그 배분하는 비율을 귀속관계에 따라 규정한다.  국무원,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 비준을 거치지 않고, 세외수입에 대해 배분하거나 또는 그 배분비율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세외수입은 국고 단일계좌 체계를 통해 수납, 저축, 환급, 청산 및 결산하여야 한다.  제30조 상•하급 정부가 나누는 세외수입은 재정부문이 급별 해결 및 적시청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중앙과 지방 재정에 기 납부한 세외수입이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이 필요한 경우 재정부와 성급 재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제32조 세외수입의 특징에 따라 일반공공예산, 정부성 펀드예산 및 국유자본 경영예산관리로 각각 포함시킨다.  제33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규정에 따라 정부성펀드, 국유자본수익과 일반공공예산 자금조달 사용을 강화하고, 예산 성적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자금사용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5장 관리감독  제34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관리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 정책집행 상황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세외수입 불법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수납단위는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재정부문과 회계심사기관의 감독검사를 받고, 사실대로 세외수입 상황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각급의 재정부문과 수납단위는 정부 웹사이트와 공공매체 등의 경로를 통해, 세외수입 항목명칭, 설립근거, 징수방식과 기준 등을 공개하며, 또한 예•결산 공개역량을 확대하여, 세외수입 투명도를 제고시키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세외수입 관리 중 불법행위를 감독 및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각급의 재정부문은 직책에 따라 수리, 조사, 신고 또는 고발처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8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세외수입을 설립, 징수, 납부,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및 <행정사업성요금과 벌금 및 몰수한 수입수지 두 라인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임시규정> 등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교육비용 관리는 본 방법을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고, 수입은 재정 전용계좌관리에 포함시킨다.  제40조 성급 재정부문은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 실제 상황에 맞춰, 세외수입관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1조 본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关于印发《政府非税收入管理办法》**  **的通知**  财税[2016]33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为了加强政府非税收入管理，规范政府收支行为，健全公共财政职能，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国家有关规定，我们制定了《政府非税收入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政府非税收入管理办法  　　财政部  　　2016年3月15日  附件:  政府非税收入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政府非税收入（以下简称非税收入）管理，规范政府收支行为，健全公共财政职能，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国家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非税收入设立、征收、票据、资金和监督管理等活动，适用本办法。  　　第三条 本办法所称非税收入，是指除税收以外，由各级国家机关、事业单位、代行政府职能的社会团体及其他组织依法利用国家权力、政府信誉、国有资源（资产）所有者权益等取得的各项收入。具体包括：  　　（一）行政事业性收费收入；  　　（二）政府性基金收入；  　　（三）罚没收入；  　　（四）国有资源（资产）有偿使用收入；  　　（五）国有资本收益；  　　（六）彩票公益金收入；  　　（七）特许经营收入；  　　（八）中央银行收入；  　　（九）以政府名义接受的捐赠收入；  　　（十）主管部门集中收入；  　　（十一）政府收入的利息收入；  　　（十二）其他非税收入。  　　本办法所称非税收入不包括社会保险费、住房公积金（指计入缴存人个人账户部分）。  　　第四条 非税收入是政府财政收入的重要组成部分，应当纳入财政预算管理。  　　第五条 非税收入实行分类分级管理。  　　根据非税收入不同类别和特点，制定与分类相适应的管理制度。鼓励各地区探索和建立符合本地实际的非税收入管理制度。  　　第六条 非税收入管理应当遵循依法、规范、透明、高效的原则。  　　第七条 各级财政部门是非税收入的主管部门。  　　财政部负责制定全国非税收入管理制度和政策，按管理权限审批设立非税收入，征缴、管理和监督中央非税收入，指导地方非税收入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财政部门负责制定本行政区域非税收入管理制度和政策，按管理权限审批设立非税收入，征缴、管理和监督本行政区域非税收入。  　　第八条 各级财政部门应当完善非税收入管理工作机制，建立健全非税收入管理系统和统计报告制度。  第二章 设立和征收管理  　　第九条 设立和征收非税收入，应当依据法律、法规的规定或者按下列管理权限予以批准：  　　（一）行政事业性收费按照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以下简称省级）人民政府及其财政、价格主管部门的规定设立和征收。  　　（二）政府性基金按照国务院和财政部的规定设立和征收。  　　（三）国有资源有偿使用收入、特许经营收入按照国务院和省级人民政府及其财政部门的规定设立和征收。  　　（四）国有资产有偿使用收入、国有资本收益由拥有国有资产（资本）产权的人民政府及其财政部门按照国有资产（资本）收益管理规定征收。  　　（五）彩票公益金按照国务院和财政部的规定筹集。  　　（六）中央银行收入按照相关法律法规征收。  　　（七）罚没收入按照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征收。  　　（八）主管部门集中收入、以政府名义接受的捐赠收入、政府收入的利息收入及其他非税收入按照同级人民政府及其财政部门的管理规定征收或者收取。  　　任何部门和单位不得违反规定设立非税收入项目或者设定非税收入的征收对象、范围、标准和期限。  　　第十条 取消、停征、减征、免征或者缓征非税收入，以及调整非税收入的征收对象、范围、标准和期限，应当按照设立和征收非税收入的管理权限予以批准，不许越权批准。  　　取消法律、法规规定的非税收入项目，应当按照法定程序办理。  　　第十一条 非税收入可以由财政部门直接征收，也可以由财政部门委托的部门和单位（以下简称执收单位）征收。  　　未经财政部门批准，不得改变非税收入执收单位。  　　法律、法规对非税收入执收单位已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二条 执收单位应当履行下列职责：  　　（一）公示非税收入征收依据和具体征收事项，包括项目、对象、范围、标准、期限和方式等；  　　（二）严格按照规定的非税收入项目、征收范围和征收标准进行征收，及时足额上缴非税收入，并对欠缴、少缴收入实施催缴；  　　（三）记录、汇总、核对并按规定向同级财政部门报送非税收入征缴情况；  　　（四）编报非税收入年度收入预算；  　　（五）执行非税收入管理的其他有关规定。  　　第十三条 执收单位不得违规多征、提前征收或者减征、免征、缓征非税收入。  　　第十四条 各级财政部门应当加强非税收入执收管理和监督，不得向执收单位下达非税收入指标。  　　第十五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以下简称缴纳义务人）应当按规定履行非税收入缴纳义务。  对违规设立非税收入项目、扩大征收范围、提高征收标准的，缴纳义务人有权拒绝缴纳并向有关部门举报.  　　第十六条 缴纳义务人因特殊情况需要缓缴、减缴、免缴非税收入的，应当向执收单位提出书面申请，并由执收单位报有关部门按照规定审批。  　　第十七条 非税收入应当全部上缴国库，任何部门、单位和个人不得截留、占用、挪用、坐支或者拖欠。  　　第十八条 非税收入收缴实行国库集中收缴制度。  　　第十九条 各级财政部门应当加快推进非税收入收缴电子化管理，逐步降低征收成本，提高收缴水平和效率。  第三章 票据管理  　　第二十条 非税收入票据是征收非税收入的法定凭证和会计核算的原始凭证，是财政、审计等部门进行监督检查的重要依据。  　　第二十一条 非税收入票据种类包括非税收入通用票据、非税收入专用票据和非税收入一般缴款书。具体适用下列范围：  　　（一）非税收入通用票据，是指执收单位征收非税收入时开具的通用凭证。  　　（二）非税收入专用票据，是指特定执收单位征收特定的非税收入时开具的专用凭证，主要包括行政事业性收费票据、政府性基金票据、国有资源（资产）收入票据、罚没票据等。  　　（三）非税收入一般缴款书，是指实施非税收入收缴管理制度改革的执收单位收缴非税收入时开具的通用凭证。  　　第二十二条 各级财政部门应当通过加强非税收入票据管理，规范执收单位的征收行为，从源头上杜绝乱收费，并确保依法合规的非税收入及时足额上缴国库。  　　第二十三条 非税收入票据实行凭证领取、分次限量、核旧领新制度。  　　执收单位使用非税收入票据，一般按照财务隶属关系向同级财政部门申领。  　　第二十四条 除财政部另有规定以外，执收单位征收非税收入，应当向缴纳义务人开具财政部或者省级财政部门统一监（印）制的非税收入票据。  对附加在价格上征收或者需要依法纳税的有关非税收入，执收单位应当按规定向缴纳义务人开具税务发票。  　　不开具前款规定票据的，缴纳义务人有权拒付款项。  　　第二十五条 非税收入票据使用单位不得转让、出借、代开、买卖、擅自销毁、涂改非税收入票据；不得串用非税收入票据，不得将非税收入票据与其他票据互相替代。  　　第二十六条 非税收入票据使用完毕，使用单位应当按顺序清理票据存根、装订成册、妥善保管。  　　非税收入票据存根的保存期限一般为5年。保存期满需要销毁的，报经原核发票据的财政部门查验后销毁。  第四章 资金管理  　　第二十七条 非税收入应当依照法律、法规规定或者按照管理权限确定的收入归属和缴库要求，缴入相应级次国库。  　　第二十八条 非税收入实行分成的，应当按照事权与支出责任相适应的原则确定分成比例，并按下列管理权限予以批准：  　　（一）涉及中央与地方分成的非税收入，其分成比例由国务院或者财政部规定；  　　（二）涉及省级与市、县级分成的非税收入，其分成比例由省级人民政府或者其财政部门规定；  　　（三）涉及部门、单位之间分成的非税收入，其分成比例按照隶属关系由财政部或者省级财政部门规定。  　　未经国务院和省级人民政府及其财政部门批准，不得对非税收入实行分成或者调整分成比例。  　　第二十九条 非税收入应当通过国库单一账户体系收缴、存储、退付、清算和核算。  　　第三十条 上下级政府分成的非税收入，由财政部门按照分级划解、及时清算的原则办理。  　　第三十一条 已上缴中央和地方财政的非税收入依照有关规定需要退付的，分别按照财政部和省级财政部门的规定执行。  　　第三十二条 根据非税收入不同性质，分别纳入一般公共预算、政府性基金预算和国有资本经营预算管理。  　　第三十三条 各级财政部门应当按照规定加强政府性基金、国有资本收益与一般公共预算资金统筹使用，建立健全预算绩效评价制度，提高资金使用效率。  第五章 监督管理  　　第三十四条 各级财政部门应当建立健全非税收入监督管理制度，加强非税收入政策执行情况的监督检查，依法处理非税收入违法违规行为。  　　第三十五条 执收单位应当建立健全内部控制制度，接受财政部门和审计机关的监督检查，如实提供非税收入情况和相关资料。  　　第三十六条 各级财政部门和执收单位应当通过政府网站和公共媒体等渠道，向社会公开非税收入项目名称、设立依据、征收方式和标准等，并加大预决算公开力度，提高非税收入透明度，接受公众监督。  　　第三十七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监督和举报非税收入管理中的违法违规行为。  　　各级财政部门应当按职责受理、调查、处理举报或者投诉，并为举报人保密。  　　第三十八条 对违反本办法规定设立、征收、缴纳、管理非税收入的行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和《违反行政事业性收费和罚没收入收支两条线管理规定行政处分暂行规定》等国家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第六章 附 则  　　第三十九条 教育收费管理参照本办法规定执行，收入纳入财政专户管理。  　　第四十条 省级财政部门可以根据本办法的规定，结合本地区实际情况，制定非税收入管理的具体实施办法。  　　第四十一条 本办法自颁布之日起施行。 |